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5
----------	-----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14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강을석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9조 신설)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가. 조례안의 제출 배경

-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¹⁾은 전기를 동력으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
-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²⁾.
- 2020년 8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 개인형 이동장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8만대, 2018년 14.3만대, 2019년 17.3만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산업도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3개 업체가 있었으나, 2020년 6월 기준으로 19개 업체가 있고, 일부 업체는 가입자 수가 약 1년 동안 5만명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김하영·황성걸,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 ‘EPM(Electronic Personal Mobility)’의 시장 분석과 향후 방향 제시”, 「조형미디어학」 Vol.18 No.2, 2015. p.96

에서 50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117건, 2018년에는 225건, 2019년에는 44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망자도 8명 발생하였음. 초기에는 이용자의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보행자의 사망 사례 및 연쇄추돌 사례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음.

<표>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규모 및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현황



자료)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0. 8.

-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육성과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의원)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실태임.

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

	<p>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	---

- 강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나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³⁾

3)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 안 제9조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금지되는 장소를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조를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안 제9조제2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4)에서도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분권한을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결 론

- 본 개정안은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및 안전을 위해(危害)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질서유도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춘 조례안이라고 하겠음.
-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또는 주차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집행부의 보다 높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강을석·복진경·김영권·
박다미·이성수·김형대·
전인수·이도희·한윤수·
김광심·김민경·이동호·
노애자·이향숙 의원
(이상14인)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u></p> <p><u>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p>
<p><u>제9조 ~ 제11조 (생략)</u></p>	<p><u>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u></p>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

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